IT 장비 관리 규정

2004. 08. 01. 제정 2020. 01. 10 개정 2024. 07. 02. 개정 2025. 09. 18.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(이하 "연맹"이라 한다)이 보유하고 있는 IT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, 9, 18.>

제2조(적용) 연맹 보유의 IT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IT장비의 범위) 이 규정에서 IT 장비라 함은 연맹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 중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.

- 1. 전자펀칭 장비(전자카드를 포함한 펀칭시스템 일체)
- 2. 기록계측용 장비(시간기록을 위한 장비 일체)
- 3. 컨트롤 플랙
- 4. PC 및 프린터, 네트워크용 장비

제2장 장비관리 체계

제4조(IT장비 관리 담당) IT 장비의 관리는 연맹 IT이사가 담당한다. 다만, 장비관리의 행정 업무를 위해 연맹 사무처를 부 관리자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 9. 18.>

제5조(담당이사의 업무) IT 이사는 연맹의 IT장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
- 1. 장비 사용계획 및 대여계획 관리
- 2. 장비의 수리 또는 추가 취득을 위한 예산 신청
- 3. 장비의 손·망실 보고 및 처리
- 4. 장비의 불용결정 및 처리
- 5. 기타 IT 장비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

제6조(장비의 점검·구입) ① IT 이사는 장비의 수리 또는 추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

사무처와 협의하여 수리 또는 구매를 실시한다. <개정 2025, 9, 18.>

- ② IT 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누구든지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 요청 시에는 이사회를 거쳐 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구매를 실시한다. <개정 2025, 9, 18.>
- ③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전자장비 보유목록에 추가하고, 연 1회 이상 장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 점검은 IT 이사와 사무처가 담당한다.

[전문개정 2025. 9. 18.]

- **제7조(관리책임)** ① IT 장비의 1차적인 관리 책임은 대여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있다.
 - ② 장비의 임차인은 사용자의 부주의 등 발생되는 손·망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 - ③ 장비의 손실의 경우, IT 이사와 사무처장의 협의를 통해 손실 배상범위를 결정하고, 망실의 경우에는 대상 장비의 실물 또는 변제 금액의 100%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 - ④ IT이사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다.
- **제8조(기록관리)** 사무처는 IT장비 관리업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, 비치해 야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 - 1. 장비대여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<삭제 2025. 9. 18.>
 - 3. IT 장비 손·망실 보고서(별지 제2호 서식)
- 제9조(장비의 불용처리) IT이사는 장비의 불용결정이 필요한 경우 IT장비 불용처리 승인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불용처리 한다. [전문개정 2025. 9. 18.]

제3장 대여신청

- **제10조 (대여신청)** ① 장비의 대여 신청은 해당 시·도 연맹 또는 클럽 등 단체 명의의 장비대여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사용일 기준 14일 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사무처장은 IT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장비 대여에 대한 사용료는 장비대여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에 따라 장비대여 신청자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9. 18.]

- ④ 각 장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1. 전자카드(SI Card)는 50개 단위로 대여 한다.
- 2. 컨트롤 스테이션(SI Control Station)은 운영 스테이션(Start, Finish, SI Master 등)을 포함하여 20개부터 10개 단위로 대여한다.
- 3. 스테이션 홀더, 지지대, 컨트롤 플랙 등 부수적인 기자재들은 필요한 만큼 대여 한다.
- 4. 프린터, 케이블 등 부수 기자재는 연맹이 보유한 장비 내에서 협의하여 필요한 만큼을 대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5. 9. 18.]

- **제11조 (장비점검)** ① 장비를 대여 받는 자는 장비 인수 후 즉시 장비 목록과 대조하여 수량, 파손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만약 장비 수량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상 내용을 IT이사 및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인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이상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주한다.
- **제12조 (반납)** ① 장비를 대여 받는 자는 장비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무처로 반납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 - ② <삭제 2025. 9. 18.>
 - ③ 장비 반납 시에는 당초 공급시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손 망실 또는 훼손 품에 대해서는 'IT장비 손·망실 보고서(별지 제2호 서식)'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비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(장비운영자 지원요청)** ① 장비 운영은 임차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 - ② 장비운영자는 오리엔티어링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, 대회 운영 시 변수 등에 대처가 가능한 자로 선임,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 - ③ 장비운영자가 없어 장비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장비운영자를 연맹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'장비대여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' 장비운영자 항목에 표기하여 요청하여야 하며, 사무처에 장비운영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.

[전문개정 2025. 9. 18.]

④ 인원의 요청 시에는 위탁 해당일 기준 30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, 장비운영자의 협조요청 동의 및 완료 시에는 위탁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의 기준을 아래에 따른다.

- 1. 인건비: 대회 1일 기준 인건비 환산. 대회일과 별도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경우. 대회 1일 기준 인건비에 해당분에 0.5를 가산한 인건비 추가
- 2. 경비: 장비운영자의 왕복 교통비, 숙박비, 식대,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

제4장 장비 등의 사용료

제14조 (사용료) ① 장비 대여에 따른 사용료는 장비 사용일 1일을 기준으로 장비대여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동일 대여 회차에 2일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경기일수마다 사용료의 50%를 가산하여 산정한다.

[전문개정 2025, 9, 18.]

- ② 장비 사용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연맹 주최 교육, 대회, 행사 등을 위임받아 시·도연맹 또는 클럽에서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. 다만, 손망실의 경우에는 실물 또는 관련 보배상기준 금액에 따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<삭제 2025. 9. 18.>
- ⑤ 장비에 대한 운송 요금이 발생할 경우, 발송자가 운송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5. 9. 18.>

제5장 장비대여의 제한

제15조(장비대여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장비사용 후 기한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
- 2. 장비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손 망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
- 3. <삭제 2025. 9. 18.>
- 4. 기타 본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 IT장비 대여신청서							
신청단체명			장비원	운영자			
행 사 명			<u> </u>				
일 시			장	소			
인수요청일		인수방법			택배, 직접수령 등		
※ 대여신청 목록							
품명	대여기	신청수	≐량(개)	사용료(원)		비고	
Station/기본	운영Station	기본	세트	50,000		8~9버전	
Station/추가	세트당(1			0		8~9버전	
Si카드	박스(507			0		9버전	
Station홀더	신청건			0		지주대 포함	
번호키	무			0		기둥에 고정	
컨트롤플랙	신청건				0	핀펀치 없음	
가산금	2일이상 사용시 50%/일					0	사용일수 기준
합계							
※ 운송요청(직접 수령시에는 작성하지 않음)							
주 소							
인 수 자	성명	전화			^{번호}		
※ 장비운영자 지원요청(자체 운영시에는 작성하지 않음)							
장비운영자	성명	전화번호					
위와 같이 IT장비 대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2							
	신청인: (인)					(인)	
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							

[별지 제2호]						
IT장비 손・망실 보고서						
사용 연맹/클럽						
손.망실 발생일자			발생장소			
손.망실 사유 (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입)						
품 명	손·망실 손실	수량(개) 망실	기준금액	변제금액	비고	
SI Card (Version.9)			80,000/EA			
SI Control Station			200,000/EA			
운영 Station			200,000/EA			
Station Holder			15,000/EA			
Station 지지대			10,000/EA			
Control plag			25,000/EA			
기타 전자장비			별도 협의			
※특이사항 : 위와 같이 장비의 손·망실 내역을 보고하고,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. 202 년 월 일						
대하우리에티아	J 리 더 매	ᅵ긔즈	소 속 성 명	((인)	

[별지 제3호]

IT장비 불용처리 승인신청서

장비명	수량	취득금액	취득년월일	상태	불용결정사유

IT장비 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목록의 IT장비에 대하여 불용을 신청하오니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 년 월 일

신청자: (인)

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